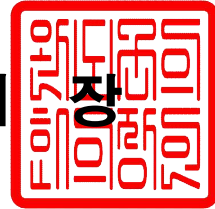


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

「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5년 7월 4일

완 도 군 의 회 의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
2. 발 의 자 : 지 민 의원
3. 제정이유
 -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(안 제3조, 안 제4조)
- 운영비 등 지원(안 제5조)

5. 관련법령 : 해당없음

6. 조례안예고기간 : 2025. 7. 4. ~ 2025. 7. 9.

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회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 1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(전화: 061-550-5934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
8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 1팀(전화: 061-550-593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2.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
1부. 끝.

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”(이하 “빨래방”이라 한다)이란 일정 공간에 세탁 및 건조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.
2. “세탁서비스”란 빨래방을 이용하여 이불·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 후 배달하는 이동세탁서비스를 말한다.
3. “취약계층 세대”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 등을 말한다.
4. “노인여가복지시설”이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, 취미활동,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완도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1.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빨래방을 설치한 해당 읍·면의 취약계층 및 노인여가복지시설
2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

제4조(운영방법) ① 군수는 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·면

사회복지시설, 읍·면 봉사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빨래방을 읍·면사무소 등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운영비 등 지원) 군수는 빨래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·운영비·그 밖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